

報 告 書

手 続

1972. 1. 14.

目 的  
要 約

厚生良薬 運送要領 変更

1. 現行要領

1. 施行期 1970. 6. 15

2. 要領 10折 2,000円 1巻入紙(5折)

2. 現行

15折 2,000円 別紙(巻) 7-9折

予算 2,000円

\* 一次変更 500円(5折)

現行予算	10折	185,000円	2065円000
変更	15折	183,880円	27,53円000
			合計 2080円000

238호

# 예 주 기 안 용 지 예 주

분류기호 문서번호 1471- (전화번호 206 ) 전결규정 조 항 전결사항

처리가간 결 제 자

시행일자 시 장 *[Handwritten Signature]*

보존년한

보	제1부 시장	<i>[Large Handwritten Signature]</i>	원	기획관여관 <i>[Handwritten]</i>
조	보건사회국장		법무과장 <i>[Handwritten]</i>	예산과장 <i>[Handwritten]</i>
기	사회과장		시민과장 <i>[Handwritten]</i>	(심사양해)
관	구로계장		법제계장 <i>[Handwritten]</i>	예산1계장 <i>[Handwritten]</i>

기안제일자 정 립 72.1.11 조 사회계장 *[Handwritten]*

정 유 수 신 참 조 과 안 략 조 발 신 통 계 1972-1-24 *[Stamp]*

제 목 서울특별시법무생식당 운영요강 변경

(제1안) 내부검제

1. 서울특별시법무생식당 설치 조례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식당 운영에 필요한 시립법무생식당 운영요강을 심정 운영하고 있는가

2. 금년 1972년도 예산 책정에 있어 1971년도 책정된 15개소에 1일급식정원 3,800명각 회사부 31명을 72년도에는 식당 10개소에 1일급식정원 3,000명(5개소 800명감소)



취식부 20명(11명감소)으로 변경되었고 또한 부식비 7원을 9원으로 인상 예산재정의 변동이 되었으나

3. 연재 장구의 금식구로 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연상때로서는 감소할수 없는 심정으로 기뻐정된 예산중에서 줄지은것이라고 범점 소요 예산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조치할것이며 아울러 서울특별시립우생식당 운영오강을 범점과 같이 변경 심정 운영로자 재검를 바랐니따.

(제2안)

수신 수신처장르

제목 물 건

1. 서울특별시립우생식당 심지조 때 제4조의 국정역 외거 사립우생식당 운영오강을 심정운영하고 있는바 금반 금식구과 방침 변경에 외거 일부 식당에 맥만 1일금식정원이 거제로정 변경되었고 또한 부식비 7원을 9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동오강을 범점과 같이 변경운영케 되었으니 압으로 동오강을 준수하여 식당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금식구로에 자정외도록 할것.

첨부: 서울특별시립우생식당 운영오강 1부 례.

수신처: 서장 2,3,4,5,6,9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예산서 (추가예산)

과목		예산액	예산내역	예산내역
농업	농업기술개발사업		8,879,956	
	경상남도농업기술원		1,529,880	취사부 $380^m \times 11^m \times 366^m = 1,529,880$
				사무용품비 $1,000^m \times 5^m \times 12^m = 60,000$
			320,000	책기 구입비 $200^m \times 800^m \times \frac{50}{100} = 80,000$
				인쇄비 $1,000^m \times 5^m \times 12^m = 60,000$
				인쇄비 $2,000^m \times 5^m \times 12^m = 120,000$
				우물구멍 $600^m \times 5^m \times 12^m = 36,000$
	각종재료		828,000	건면제 조물 $10^m \times 200^m \times 366^m = 732,000$
				비료구입 $1,000^m \times 5^m \times 12^m = 60,000$

				전기용 $800^m \times 5^m \times 12^m = 48,000$
		용기용기	138,000	주유용 $1500^m \times 5^m \times 12^m = 90,000$
		연료기	85,100	연료기용기 $12,700^m \times 5^m = 63,500$ 주유기연료 $18^m \times 5^m \times 2^m \times 120^m = 21,600$
		주유기	5,978,976	주유기 (5개용) $39.6^m \times 200^m \times 366^m = 2,904,576$ 주유기 $9^m \times 800^m \times 366^m = 2,635,200$ 연료기 $80^m \times 3^m \times 5^m \times 366^m = 439,200$

## 서울특별시영우신식당은영요장 (안)

### 1. 목적

영세부동근로자및 중년이상인으로 하여금 저임가로 주식 (공수 1기식)을 제공하여 이들의 자활양상및 생활안정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2. 운영방법

가. 본식당은 구정장 부임하여 운영한다.

나. 본식당은 매일 10000여 개정한다.

다. 본식당 회의면 1명급식 정원은 다음과 같다.

#### 1) 식당회의면 1명급식 정원(10개소)

구	영	양	1명급식		회	의
			정원	정원		
1970.8.0						
시						
경	총	상	600명	500명	3인	총
	계	가				계
	○ 동	향	200	300	2	향
	○ 성	파	300	300	2	파
	○ 성	조	300	300	2	조
	○ 성	종	200	200	2	종
	○	미	200	200	2	미
		아	200	200	2	아
		7	200	200	2	7
		동	200	200	2	동
		정	200	200	2	정
남대문	○ 서	목	200	300	2	목
경남도		안	200	200	2	안
		동	200	200	2	동
영등포	○ 영	영	300	300	2	영
	○	등	300	200	2	등
		포	200	200	2	포
		동	200	200	2	동
10개소		동	200	200	2	동
		동	200	200	2	동
		동	200	200	2	동
		동	200	200	2	동
	계	15	3,800명	3,800명	31인	
		개소				

- 다. 식사는 1인1인1기 소량론 (건편) 250그램으로 한다.
- 라. 투식은 1기9원으로 한다.
- 마. 배식자로 투여정수하는 공식가격은 1기당 5원으로 한다.

3. 식배정수 방법

- 가. 식당은 양질의 정수한 먹물은 양말 17시까지 썬지서서 먹  
되야어 당이 구정 사외과장 권업하여 시공로책 붙일  
한다.
- 나. 막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사는 1일을 연장할수 있다.
- 다. 공투입은 계산까지 아니한다.

4. 운영비 경비

- 가. 투식을 양국민 투식(언플 배정) 또는 기타 운영비는  
구정장에게 배정 양말 경비만다.
- 나. 식당은 언플 식배정수를 회하여 식당책임권을 정구  
권원으로 지정하여 담임만다.
- 다. 식당담임권원은 식당은 언 사함을 구정장에게 알로로치  
보고하고 구정장은 썬지서서에 회하여 이를 함로로 운영  
사함을 시장에게 위할 5원까지 보고만다.

5. 봉사원(회사부)고용

- 가. 봉사원(회사부)정원은 강식당에 2명씩을(총구3명)을  
고용만다.

6. 이 료 강은 1972년 2월 1일 부터 시행만다.

1972.            월            일

서            출            록            명            서            장

(4쪽)

잠수입금납부

1970년 6월 25일

잠수과장 귀하

잠수과장 귀하

아래와 같이 후성식당 수입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목			납부액	건 수	비 고
관	항	목			
잠수입	잠수입	후성식당수입			일입은 식당

(시사)

서울특별시립후식당운영보고서

1971년 월 일

구 장 장 (인)

서울특별시립후식당

안익락 같이 운영상황을 보고합니다. 자 인

1. 곡식인원 및 수확금액

구분 종별	곡식 인원	단가	수확금액	곡식인 원부기	수확금 부기	비고
국수						

2. 식량수출상황

구분 종별	단위	수출량	소출량	수출액 부기	소출액 부기	비고
건면		7				

(시책)

서울특별시립후생식당운영일보

(월 일 분)

1971 년 월 일

서울특별시립후생식당운영

직 실 영 (인)

구 정 장 과 아

1. 금식인원 및 수입 가격

구분 종별	금식인원	단가	수입금액	금식인 원누계	수입금액 누계	비고
국수						

2. 식당수불상황

구분 종별	단위	수입량	소비량	수입량 누계	소비량 누계	저고량	비고
건면		8					

시민후생식당 운영요강



1. 목적

국민영세행상인 및 영세부동근로자 또는 국민영세면으로 하여금 영가보주식(국수1기식)을 제공하여 이들의 자활향상 및 생활안정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운영방법

- 가. 본식당은 구정장 및 시립사업소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 나. 본식당은 매일 09:00시에 개점한다.
- 다. 본식당 위치 및 1일급식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식당 위치 (10기소)

식당명	소재지
동대문후생식당	동대문구 정랑비동 205외 772
마장동 "	성동구 마장동 275
금호동 "	성동구 금호동 3가 1265외 51
성북 "	성북구 종암동 3외 72
삼양동 "	성북구 디아동 537외 150
북아현동 "	서대문구 북아현동 5-10
영등포 "	영등포구 영등포동 463
봉천동 "	영등포구 봉천동 502
남대문 "	시립남대문 합숙소내
본막동 "	시립영등포 "

2) 1일 급식정원 : 각 식당 300명

- 가. 식사는 1인1기소백분(건면) 300그램으로 한다.
- 나. 부식비는 1인1기 5원으로 한다.
- 다. 식사자로부터 징수하는 급식가액은 1기당 5원으로 한다.
- 라. 식사에 필요한 주식용 양주는 보건사회부 부담으로 하고 기타 운영비는 시가 부담한다.

3. 식대 징수 방법

가. 식당운영에서 징수한 매공은 당일 17시까지 벌지 서식이  
외하여 당해구청의 사회과장(사업소장) 책임하에 시공고에  
불입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는 1일을 연장  
할수 있다.

나. 공휴일은 계산까지 아니한다.

4. 운영비경리

가. 구식용 양곡 및 부식비또는 기타운영지는 구정장및 사업  
소장에게 배정영답 경리케한다.

나. 식당운영및 식대징수통 위하여 식당 책임 직원은 징구  
직원으로 지정하여 답입케한다.

다. 식당 답입직원은 식당운영사항을 구정장에게 월보로서  
보고하고 구정장및 사업소장은 이를 월보로 운영사항을  
시장에게 월별 5일까지 보고한다.

5. 종사원(취사부) 고용

가. 종사원정원. 각식당에 취사부 2명씩을 고용한다.

6. 이 요강은 1970.8.15부터 시행한다.

1970, 8,

시 울 록 법 시 장